

의안번호	2200013
의 퇴 인	김성원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 계 번호	24D0713
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1,800만원(연평균 4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종합계획 수립 (안 제8조)	218	0	0	0	0	218	44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²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)	- 장기미반환공여구역 ¹⁾ 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·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- 회계의 세입은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변상금·신탁수입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- 회계의 세출은 안 제9조에 따른 연도별사업계획의 시행자금, 안 제26조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설치자금, 안 제27조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자금 등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)	-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시책,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, 지역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함	의무규정

1) 제정안 제2조에 따르면,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반환공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대상이 된 공여구역 중 10년 이상 반환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

[참고 1] 반환예정공여구역 현황

2) 제정안 제16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, 제정안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세의 감면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

3	안 제10조(사업시행자) 및 제31조(토지 등의 수용)	-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 함 -사업시행자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		-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-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3조(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)~제15조(연수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)	-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함)을 신설·증설할 수 있음 -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신설·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·인가·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음 -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연수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·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·인가·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9조(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)	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2조(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)	-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안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, 하수도·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·용수공급시설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23조(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)	-국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인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방세 손실분을 10년간 보조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26조(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, 생활체육시설·공원·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9	안 제27조(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)	-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주민 중 전직·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-국가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33조(사업비의 지원)	-국가 및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·융자 또는 알선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제1항) -제1항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-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반환시까지 지원하여야 하고, 반환이 완료된 후 10년간 지원해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11	안 제34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장기미반환 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)	×	특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자금, 주민편익시설 설치 자금 등의 규모를 알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
2	안 제8조(장기미반환 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)	○	-
3	안 제10조(사업시행자) 및 제31조(토지 등의 수용)	×	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개발사업, 토지의 수용·사용, 이주대책의 규모 등을 추정 곤란

4	안 제13조(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)~제15조(연수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)	×	-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의 신설·증설을 허용할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공장·학교·연수시설의 위치·규모, 공장·학교·연수시설의 신설·증설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5	안 제19조(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)	×	-무상·할인 대부·매각 등의 대상이 될 국·공유재산을 예측하기 어렵고, 무상·할인·매각 규모 등을 추정 곤란
6	안 제22조(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)	×	-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안에 조성될 산업단지의 위치,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, 지원도로 건설비, 하수도·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·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추정 곤란
7	안 제23조(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)	×	-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지정될 지역, 세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,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손실분 규모를 추정 곤란
8	안 제26조(주민 편의 시설 설치 지원)	×	-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설치될 주민편익시설의 종류·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9	안 제27조(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)	×	-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등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 내용, 지원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 곤란
10	안 제33조(사업비의 지원)	×	-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국가 및 시·도지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11	안 제34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×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·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산림자원 조성비·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규모를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8조에 따른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고 가정하고, 추계기간 중 첫 해인 2026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³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 및 법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1,8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~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⁴⁾(2억 300만원)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⁵⁾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

[표 2]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종합계획 수립 (안 제8조)	218	0	0	0	0	2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(2024년 4월 기준, 단위: %)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5.1	3.6	2.6	2.2	2.2	2.1	2.1	2.1	2.0

- 4) 행정안전부의 2021년~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(자료: 행정안전부)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2억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억 6,000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 5,000만원)
- 5)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

[참고 1]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공여구역 현황

	위치	기 지 명
1	서울 용산	용산기지(잔여)
2		수송부
3		캠프 모스 일부
4	경기도 의정부	캠프 스탠리
5	경기도 평택	CPX 훈련장(잔여)
6		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
7		알파탄약고
8	경기도 동두천	캠프 모빌(잔여)
9		캠프 케이시
10		캠프 호비 본체
11	전북 군산	군산비행장 일부

주: 주한미군기지 통·폐합관리계획(2004)에 따라 반환 대상 결정 후 순차적으로 반환 중이며, 2023년 11월 기준 69개 기지가 반환 완료되었음

자료: 국방부, 2023.11.